

『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권 순 형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1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- 2) 「축산법」 제2조
- 3)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
- 4)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2조
- 5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「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」은,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